

의안번호	2216713
의 퇴 인	서삼석의원
회 답 일	2026.4.21.
추계번호	26D0818

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 (이전 지역 지원)	국가는 이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특례사업(이하 “특례사업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음(제1항)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지원만으로는 이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,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 제1항에 따른 특례사업은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과 별도로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인프라건설, 주거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조성, 이주자 등의 직업훈련·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, 그 밖에 국가와 이전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주자 등의 지원 및 이전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등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함. 다만,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규모,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의무규정
2	안 제15조의2 (소음피해 추가지원)	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별도로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 등의 보상 및 주민 소득사업 등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제21조제2항(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) 신설	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 지원,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(제2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5조 (이전 지역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5조의2 (소음피해 추가지원)	
3	제21조제2항 (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) 신설	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「국유재산법」 제13조(기부채납), 제55조(양여)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,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이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, 대상부지를 선정해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기부 후에 이전 군용지를 받는 절차로 추진됨
- 개정안은 국가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이전 주변지역 특례사업을 부담하며,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국가의 특례사업 지원,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개정안은 특례사업으로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건설, 주거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조성, 이주자 등의 직업훈련·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, 그 밖에 국가와 이전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

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주자 등의 지원 및 이전지역 발전에 필요하
다고 협의한 사항 등으로 규정

- 개정안은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
한 경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소음피
해에 대한 추가지원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 등 추가재정소
요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에 대한 평가는 이
전부지가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 작성·심의가 완료되고 합의각서가 체결
되기 전에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,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
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로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
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무안군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·통보하였
으며, 향후 이전부지선정위원회·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이전후보지 선
정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, 이전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이전
사업비, 지원사업비, 소음피해에 따른 추가지원,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
지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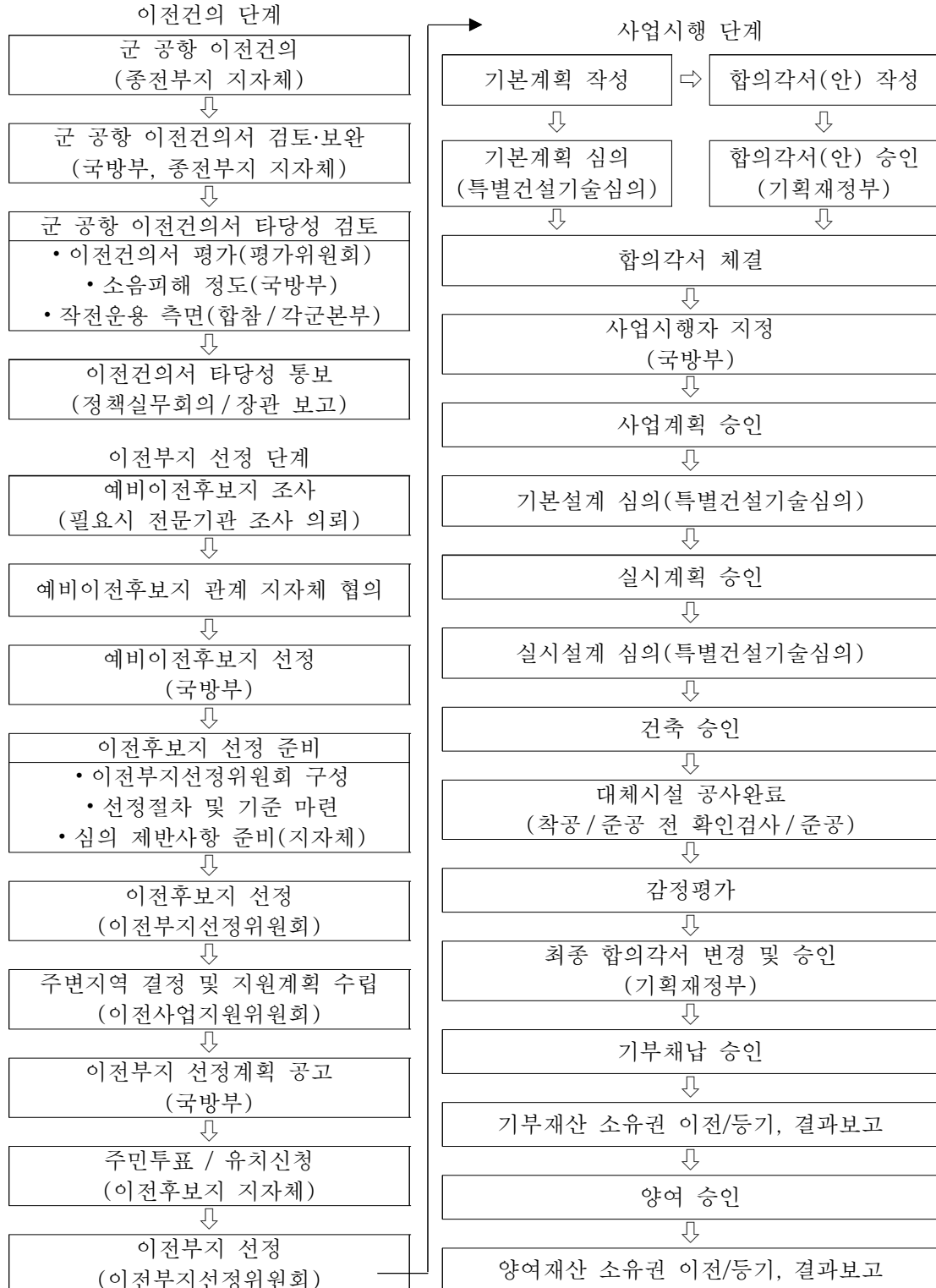
[표 1]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현황

시기	주요추진내용
2014.10월	광주시 이전 건의
2016.8월	국방부 이전 타당성 '적정' 통보
2018.2월~2022.6월	국방부(공군) 이전후보지 조사 및 작전성 검토
2023.12월	광주시·전라남도 광주 민·군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하는데 합의 반면, 무안군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입장 견지
2025.12월	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6자협의체 공동발표문 체결
2026.4월	무안군 주민설명회 개최 및 예비이전후보지 선정·통보

자료: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<참고>

[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 절차도]



자료: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」, 국방부훈련 제2857호, 별표1

IV. 부대의견

☐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